

심 사 보 고 서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5
----------	-----

2020. 3. 12.(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12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사유

- 충청권에서는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한 상황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여 지역스포츠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회개요

- 명 칭 : (가칭)2030 충청 아시안게임 *주관-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개최시기: 2030년 9월 ~ 10월 중(16일간)
- 개최지 :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 규 모 : OCA 회원 45개국, 3만 여명 참가(선수 12,000명)
- 대회종목: 40종목 67 세부종목 465경기

□ 개최 필요성

- 충청권 최초로 국제경기대회 개최
- 국제적인 체육시설 건립으로 스포츠 인프라 확보
- 충청권 4개 시·도 비용분담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 지향
- 충청권 공동개최로 청주국제공항 홍보 및 활성화 기대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성공개최 마중물 역할 수행

□ 기대 효과

- 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유발
- 560만 충청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화합
- 충청권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과 충청권의 국제 브랜드 이미지 향상
- 2032 서울-평양 올림픽과 연계하여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보흠)

- 이 동의안은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역시도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2030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2월 7일 충청권 지자체장들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충청권 지자체 공동으로 ‘2030 아시안게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가 열렸으나 560만 주민이 거주하는 충청권에서는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임.
- 공동개최는 지역적,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대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살리고 개최비용 과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정부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추진에 발맞춰 사전대회 성격의 아시안게임 개최로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홍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충청권의 2030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국가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2019년 12월에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2030 아시안게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유치의 당위성만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다른 충청권 시도의 해당 의회 동의안 제출 일정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의안번호	제 385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30 아시안게임 총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4일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의안 번호	385
----------	-----

제출일자 : 2020. 3. 4.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아시안게임」은 45개국 아시아 국가가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 45억 아시아인의 우호 증진과 화합,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세계종합스포츠 대회임
-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한 상황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여 그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축적한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개요

- 명 칭 : (가칭) 2030 충청 아시안게임 * 주관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개최시기 : 2030년 9월 ~ 10월 중(16일간)
- 개최지 :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 규모 : OCA 회원 45개국, 3만여명 참가(선수 12,000명)
- 대회종목 : 40종목 67세부종목 465경기 * 2018 자카르타-팔렘방 AG 참고

나. 필요성

- 최초로 충청권 국제경기대회 공동 개최, 560만 충청인 자존심 회복
 - '93년 대전세계박람회 이후 37년만의 국제 메가 이벤트를 통해, 충청인 자존심 회복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국제적인 체육시설 건립, 수도권에 집중된 스포츠 인프라 분산
 - 공공체육시설 수도권 집중, 충청권의 스포츠 향유기회 전국 최저수준
 - * 수도권 8,543(32%), 영남권 7,398(27%), 호남권 4,234(16%), 충청권 3,946(15%)
-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올림픽어젠다 2020”에 가장 부합
 - 기존 아시안게임에 비해 1조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모범 선례 마련
 - 중앙정부 국비지원(30%) 및 충청권 4개 시·도 비용분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부담 최소화
- 충청권, 2030 아시안게임 개최역량 충분
 - (체육시설) 4개 시·도 기존시설 최대 활용하여 경기장 신축 최소화
 - (교통) 대한민국 교통중심지로, 도로·철도·항공 인프라 완벽 구축 예정
 - * 청주국제공항으로부터 1시간 이내(반경 50km) 모든 경기장 배치
 - (문화) 백제문화권·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문화·관광자원 풍부
 - * 문화재청 지정 7대 문화권 중 2대 문화권의 중심권역으로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보유
 - (경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 보유
 - * 충청권 '18년 지역내총생산(GRDP) 240조, '19년 재정규모 약 19조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성공개최의 마중물
 - '86 아시안게임·'88 올림픽과 같이, 2032 올림픽의 디딤돌 역할
 - 국제 스포츠계 최대 행사를 연달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 의지를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

다.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 세계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대규모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경제적 유발효과 : 18조 4,903억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 고취

- 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하던 충청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 충청권 결집
- 지역 간 화합·통합모델로서, 국가 통합의 모범적 선례 마련

○ 충청권의 세계화 도약 기틀 마련

- 대한민국·충청권의 국제 브랜드 이미지* 향상

* 동북아 과학수도(대전), 대한민국 행정수도(세종),

세계 바이오·뷰티산업의 중심(충북),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거점(충남)

○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세계 평화 분위기 정착에 기여

- 2032 서울-평양올림픽과 연계,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
- 전 세계에 한반도 통일, 세계 평화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3. 관련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